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7422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7422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72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고, 피항소인1. B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변론 종결 2024. 10. 2.

판결 선고 2024. 10. 3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72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4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에 대하여는 일부 항소).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의 이 법원에서의 변제항변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결론 제외).

○ 제1심판결 이유 2.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피고 C의 추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2023. 9. 7.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금 70,258,590원을 임의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이 사건 각서금 채무는 일부 변제되고 66,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1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2023. 9. 7. 원고 계좌로 70,258,59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입금액은 지연손해금 4,198,056원[= 66,104,000원×(5%×2022. 6. 14.부터 2023. 8. 29.까지 442일/365일+12%×2023. 8. 30.부터 입금일인 2023. 9. 7.까지 9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66,060,534원(= 70,258,590원 - 4,198,056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이 사건 각서금 채무는 43,466원(= 66,104,000원 - 66,060,534원)이 남게 된다.

피고 C의 추가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 C이 가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변제는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임의변제로서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유 없다.
- 2)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이 사건 각서금 채무 원금 4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정인

판사유성혜

판사서희경